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996호	2026. 4. 30.(목)

차 례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9호	석남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사업 준공 고시	———— 1
------------------	------------------------------------	--------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5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21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 3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 44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89호

석남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사업준공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5-37호(2025. 2.26.)로 고시된 석남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라 공사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4.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석남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구 석남동 322-75번지 일원
 - 면 적: 17,849.6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서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
4. 준공 내역
 - 공동이용시설 조성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대지면적(m ²)	연면적(m ²)	층수	비고
신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석남동 322-104번지 일원	446	225.37	지상 2층	

- 씬터 조성
 - 포장 및 식재공사
 - 파고라 및 운동기구, 보안등 설치
- 기반시설(주차장) 정비
 - 주차면 및 카스토퍼 재정비
 - 스텐실 포장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032-560-30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4.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단구 설치 및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 따라, 관할 체육시설의 목록을 현황에 맞게 재정비하고, 조례 내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사용료 감면혜택 확대를 통해 체육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사용허가 우선순위(안 제5조)
- 사용료 등의 감면(안 제12조)
-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체육시설(별표1)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사용료(별표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3183,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단구 설치 및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 따라, 관할 체육시설의 목록을 현황에 맞게 재정비하고, 조례 내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사용료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체육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안 제2조)
- 나. 사용허가 우선순위(안 제5조)
- 나. 사용료 등의 감면(안 제12조)
- 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체육시설(별표1)
- 라.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사용료(별표3)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제다목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11.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를 “체육회에서”로 한다.

제12조제4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구민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우선 사용 허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검단구민, 인천광역시 검단 체육회, 검단 소속 체육회에도 적용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북청라대교 교량하부체육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17	-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피클볼장 , 주민운동 시설, RC경기장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11	- 배드민턴장
서구국민체육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25	- 휘트니스실, 문화교실,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청라복합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26	- 수영장, 휘트니스룸
서구실내게이트볼장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124 (신현동 184-4, 원신근린공원내)	- 게이트볼, 배드민턴장
검암 국궁장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468-19	- 국궁장
가좌국민체육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39-3, 49	- 문화교실,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별표 3]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비 고	
- 서구국민 체육센터 - 청라복합 문화센터 - 가좌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1일 사용	2,000	3,000	5,000	○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 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자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 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 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 를 말함.	
		단체	1,500	2,500	4,000		
		월회원	28,000	33,000	42,000		
		강습회원	38,000	44,000	52,000		
- 서구국민 체육센터	체 령 단련실	1일 사용	-	2,000	3,000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 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 를 말함.	
		월회원		25,000	35,000		
- 서구국민 체육센터 - 가좌국민 체육센터	체육관 사용료		700	1,200	1,500	○ 1시간 기준	
- 서구국민 체육센터 - 청라복합 문화센터 - 가좌국민 체육센터	수강료	체육 프로 그램	탁구등	30,000	35,000	40,000	○ 주5회(월~금) 운영의 1개월 강습 (1일 1회 1시간, 배드민턴은 1일 1회 2시간 기준)
			배드민턴	28,000		33,000	
			에어로빅	28,000		33,000	
		문화프로그램	20% 할인		4,000 범위 내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 내 ○ 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 4주를 1개월로 봄	
- 서구국민 체육센터 - 가좌국민 체육센터	대관료	체육관	80,000		○ 1회대관은 시행규칙 별표의 조기,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사용 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비 고	<p>○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 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p> <p>○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p> <p>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p> <p>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p> <p>3)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p> <p>4) 3개월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p> <p>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호제1호제다목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p> <p>11.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p>
<p>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단, 서구민은 타지역 주민보다 사용에 있어 우선한다. <단서 신설 2023.5.4.></p> <p>1. 2. (생략)</p> <p>3. 구 소속 <u>체육회, 공공스포츠 클럽</u>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p> <p>4. ~ 7.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체육회에서</u> ----- -----</p> <p>4.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p>	<p>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⑤ ~ ⑨ (생략)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⑤ ~ ⑨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스포츠클럽 시행령

부칙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호의 스포츠클럽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 중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 및 예우)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9의2(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2(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8..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4.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단구 설치 및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 따라, 관할 체육시설의 목록을 현황에 맞게 재정비하고,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 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조항 신설(제6조의2)
- 관할 체육시설 목록 재정비(별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3183,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단구 설치 및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 따라, 관할 체육시설의 목록을 현황에 맞게 재정비하고,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 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조항 신설(제6조의2)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방문 차량, 유료 이용객, 관용 차량 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기준 마련

나. 관할 체육시설 목록 재정비(별표)

- 행정체제 개편 및 신규 시설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 목록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부설주차장의 사용료 등)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 및 체육시설 관리자는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유료 이용객이 시설 이용을 위하여 주차하는 차량. 이 경우 주차요금 면제 시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종일권 이용자(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종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시간 이내(1일 1회에 한정한다)

나. 종일권 외의 유료 이용자: 유료 이용 시간에 1시간을 더한 시간 이내(주차한 시간 동안 유료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 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운영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관일(제9조 관련)

명 칭	구 분	사용시간	휴관일
북청라대교 교량하부체육시설	조 기	06:00 ~ 10:00	명절(설, 추석)연휴(연휴에 따른 대 체공휴일 포함), 임시공휴일, 노동 절,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주 간	10:00 ~ 18:00	
	야 간	18:00 ~ 22:00	
서구국민체육센터	조 기	06:00 ~ 09:00	매주 일요일, 명절(설, 추석)연휴 정부 및 구청방침에 따른 휴일 (공휴일 등) 그 밖의 휴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날 ※ 수영장 : 토요일 06:00 ~ 17:00
청라복합문화센터	오 전	09:00 ~ 13:00	
	오 후	13:00 ~ 18:00	
가좌국민체육센터	야 간	18:00 ~ 22:00	
서구실내게이트볼장	조 기	06:00 ~ 09:00	매주 월요일, 명절(설, 추석)전일· 당일 그 밖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주말, 공휴일 : 07:00 ~ 21:00
	주 간	09:00 ~ 18:00	
	야 간	18:00 ~ 22:00	
검암국공장	조 기	06:00 ~ 09:00	연중무휴
	오 전	09:00 ~ 13:00	
	오 후	13:00 ~ 18:00	
	야 간	18:00 ~ 2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6조의2(부설주차장의 사용료 등)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p>② 구청장 및 체육시설 관리자는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p> <p>1. 유료 이용객이 시설 이용을 위하여 주차하는 차량. 이 경우 주차요금 면제 시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p> <p>가. 종일권 이용자(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종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시간 이내(1일 1회에 한정한다)</p> <p>나. 종일권 외의 유료 이용자: 유료 이용 시간에 1시간을 더한 시간 이내(주차한 시</p>

	<p><u>간 동안 유료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u></p> <p><u>2.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 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u></p> <p><u>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 운영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u></p>
--	---

관계 법령 발췌

□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별표 1의 사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결정 및 징수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 및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121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4.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설치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1의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검단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삭제(안 별표 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과, 전화 032)560-4902, 팩스 032)560-2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설치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의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검단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삭제(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1조의2 관련)

명 칭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21번길 10(석남동)
인천광역시 서구가좌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87(가좌동)
인천광역시 서구연희노인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63(심곡동)

관계 법령 발취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제물포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중앙동2가·중앙동3가·중앙동4가·해안동1가·해안동2가·해안동3가·해안동4가·관동1가·관동2가·관동3가·항동1가·항동2가·항동3가·항동4가·항동5가·항동6가·항동7가·송학동1가·송학동2가·송학동3가·사동·신생동·신포동·답동·신흥동1가·신흥동2가·신흥동3가·선화동·유동·율목동·도원동·내동·경동·용동·인현동·전동·복성동1가·복성동2가·복성동3가·선린동·송월동1가·송월동2가·송월동3가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영종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검단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동·불로동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검암동·오류동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한 좌표 X=551024.13 Y=164856.52, X=551750.38 Y=166178.22, X=552396.98 Y=168075.73, X=552570.66 Y=170050.11, X=552593.01 Y=170576.65, X=552493.80 Y=171346.47, X=552459.45 Y=172047.07, X=552479.91 Y=172812.68, X=552523.04 Y=173557.09를 연결한 선의 북부 지역

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127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4.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 기준 마련과 금고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금고 지정 평가항목의 평가 방법 개선 및 명칭 변경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560-4192, 팩스 560-2722, 이메일 chym7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 기준 마련과 금고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 약정금리 공개 방법 신설(안 제16조)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평가 방법 개선 및 명칭 변경 사항 (안 별표1,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금고 약정금리 공개) 구청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3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4) (4) 18 (6) (5) (6) (1)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 : 공금예금, MMDA, 보통예금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7) (4) (7) (2)
3. 주민 이용의 편의성		21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7) (5) (6) (3)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 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 그 밖에 사항		2
	가. 탄소중립 기여도	(2)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 다만,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장 최근 자료 기준)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8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1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점)

- 공금예금 및 MMDA 적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주민이용의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발생시 대책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강화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2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및 출구실적,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09 456 379 497"><신 설></p> <p data-bbox="172 808 587 848"><u>제16조</u>(시행규칙) (생략)</p>	<p data-bbox="774 456 1342 763"><u>제16조(금고 약정 금리 공개)</u> 구 청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 출 및 예금 금리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 data-bbox="774 808 1342 904"><u>제17조</u>(시행규칙) (현행 제16조와 같음)</p>

관계법령 발취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4.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지방세기본법」제135조제2항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5(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6. 금고약정의 공개

[1]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2] 협력사업비의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3] 금고 약정 금리 공개

○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자치단체 누리집과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7. 보칙

[1]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 약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고나 자료 제출의 내용*·시기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함.

* (예시)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등 자금 관리 필요 사항

[2] 재검토 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1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4.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할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별지 금고지정 평가항목 명칭 변경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560-4192, 팩스 560-2722, 이메일 chym7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할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 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명칭 변경 사항(안 별지 제3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심사기준	위원별								합계	평균
총 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 주민 이용의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구축 운영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6. 그 밖에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7조----- ----- -----.</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											[별지 제3호서식]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금융기관명 :										
심사기준		위원별							합계	평균	심사기준		위원별							합계	평균
총계											총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나. (생략)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나. (생략)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마. 삭제										
3. 주민이용의 편의성											3. 주민이용의 편의성										
가.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라. (생략)										
4. 금고업무 관리능력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라. (생략)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가.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나. (생략)										
6. 그 밖에 사항											6. 그 밖에 사항										
가. (생략)											가. (생략)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2025.12.10. 시행)」

7. 보칙

[1]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